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6. 14 선고 2017나200727(본소), 2017나200734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 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1. A

2. B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C

변론 종결 2017. 5. 17.

판결 선고 2017. 6. 14.

제 1 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. 12. 9. 선고 2016가단71849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선택적으로,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들에게,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/2 지분에 관하여,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. 12. 12. 접수 제16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, 2005. 3. 4.자 약정 또는 2011. 5. 13.자 약정 또는 2012.10. 25.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. 12. 12. 접수 제16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원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5쪽 10행 중 「...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).」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

「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, '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는 F을 매개로 이루어진 피고와 D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, 또한 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도 무효이므로,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또한 인정될 수 없다'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D 사이에 F을 매개로 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

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D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 명의로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D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함께 12억 원을 편취하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D이 모르는 사이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범죄사실 등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등]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F의 D에 대한 편취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.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음으로 피고는, '피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 43,023,600원을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바,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위 비용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'라고 주장한 다.

그러나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용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앞서 이 사건 부지 등 매수와 관련하여 편취한 것으로 실시한 12억 원 외에도 이 사건 부지 매수를 위한 각종 세금,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1억 1,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간 사실, 그 중 5,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43,023,600원을 실제 부담한 자는 피고가 아닌 편취 피해자 D으로 판단된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.」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성지호, 판사 한윤옥, 판사 윤이진